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46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 최진혁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ㆍ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허ㆍ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6명)

1. 제안이유

○ 1인가구 증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서울 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놀이터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동물놀이터 면적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조례 제3조에 따른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함.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는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과 문화공원, 체육공원 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 개정을 통해 놀이터 면적 기준을 도보권 근린공원 수준인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 체육공원 내 설치 등을 규정하여 대규모 유휴공간이 부족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환경을 조성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놀이터에 대한 면적 기준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에 따른 주제공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 ④ (생 략) <신 설>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에 따른 주제공원